

(주)4 링크스 복지규정

2025.10.01 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주식회사 4 링크스의 임직원(이하 "직원"이라 한다)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인사규정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 항목별 적용 대상을 달리 할 수 있다.

제 2 장 건강관리 및 동호회

제 3 조 (건강검진)

-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해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직원 및 가족에 한해 다음의 기준에 의거 종합정밀검진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단, 입사 후 6개월 미만 근무자 및 휴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5.10.01>

구분	수혜대상	지원한도(금액)	비고
직원	본인 및 배우자	최대 30만 원 / 인	
임원	상동	최대 100만 원 / 인	미혼 임원의 경우 부모 1명까지 지원

- ③ 삭제 <25.10.01>
- ④ 회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(반차)를 부여한다. <신설 25.10.01>

제 4 조 (여성보건 지원) <신설 25.10.01>

- ① 회사는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.
- ②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며, 사용 시 기존 연차에서 차감한다. 단,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마이너스 차감하여 익년도 부여되는 연차에 반영한다.

제 5 조 (동호회 운영)

회사는 직원이 체력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관련된 사항은 별도 동호회 운영규정을 따른다.

제 3 장 경조 및 기념일

제 6 조 (경조금 및 경조휴가)

- ① 회사는 직원의 경조사를 위해 하기의 경조금 지급표에 의거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경조금은 직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금 신청 시 경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주관부서에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경조금 지급의 기준은 제출된 증빙서류의 일자로 하며, 기준일자 3 개월이 초과된 경우 그 청구권이 소멸된다.
- ④ 단, 조의금에 한해 선지급할 수 있다.

[경조금 지급표]

구분		경조금			경조화환		경조휴가
		금 액	본 인	배우자	본 인	배우자	
축 의 금	본인결혼	500,000	O	-	O	-	5일(휴일미포함)
	자녀결혼	300,000	O	-	-	-	1일(휴일포함)
	자녀출산	-	-	-	-	-	10일(휴일미포함)
	회 갑(부모)				-	-	1일(휴일포함)
	칠 순(부모)	300,000 (택1)	O	O	-	-	1일(휴일포함)
	팔 순(부모)				-	-	1일(휴일포함)
조 의 금	배 우 자	500,000	-	O	-	O	5일(휴일포함)
	본 인	300,000	O	O	O	O	5일(휴일포함)
	자 녀	300,000	O	-	O	-	5일(휴일포함)
	조부모 및 외조부모	-	-	-	-	-	3일(휴일포함)

* 회갑은 61 세, 칠순은 70 세, 팔순은 80 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

* 결혼은 동일 경조사에 한해 수혜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지급하며, 이외 경조는 1명에 한해 지급함

제 7 조 (기념일 지원) <신설 25.10.01>

- ① 회사는 직원의 생일에 소정의 선물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명절(구정, 추석 등)에 전 직원에게 선물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4 장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

제 8 조 (재해보상)

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 사고·질병·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 보상한다.

1. 보상범위 및 기준

구 분	산 업 재 해	공 상	비 고
치 료 비	치료비의 100%	치료비의 100%	비급여항목 포함
휴업급여	평균임금의 100%	평균임금의 100%	
유족보상	평균임금의 1,000 일본	-	

2.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장애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장해보상을 한다.

3. 상기 보상기준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한다.

4.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수령 위임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함이 있는 보상의 경우에는 위임을 받고 미리 보상할 수 있다.

② 다음과 같이 업무 외 개인 질병 치료 또는 사망 시 보상할 수 있다.

1. 질병의 종류 : 결핵성폐질환, 급성 B 형간염, 간경화, 뇌졸중, 심근경색, 암(경계성 종양 및 상피내암 제외)

2. 보상범위 및 기준

구 분	지급기준	비 고
유족보상	기본급의 300 일본	
휴가 중 급여	기본급의 100%	휴가시작일로부터 1 개월에 한함
휴직기간 중 급여	기본급의 70%(1~6 개월) 기본급의 50%(7~12 개월)	휴직시작일로부터 1 년에 한함

③ 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합의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정근로시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 : 최대 500 만 원 이내

2. 개인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및 교통사고 특례법 상의 음주운전은 제외함

④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복리후생 지원

제 9 조 (식대 지원) <신설 25.10.01>

- ① 회사는 매월 직원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일당 1만원씩 점심식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연장근로한 직원에게 1회당 최대 1만 2천원씩 석식대를 지원할 수 있다. 해당 비용은 당월 개인결제분을 다음 달에 일괄 정산하여 지급한다.
- ③ 식대는 매월 25 일에 지급한다. 단,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 또는 다음날로 한다.

제 10 조 (교통비 지원) <신설 25.10.01>

- ①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22시 30분~익일 6시 30분 사이에 퇴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정산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교통비 지급 한도는 월 35,000 원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필요 시 회사 사정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
제 11 조 (자기계발비) <신설 25.10.01>

회사는 직원의 역량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구 분	세부내용
지원 항목	업무 관련 도서 구입비, 교육 수강료 등
직급 제한	수습기간 내에는 지원 불가
지원 횟수 제한	연간 2회
사전 승인제	부서장 승인 필요(교육신청서 또는 도서신청서 제출)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제 2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3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7월 23일부터 보완 시행한다.

제 4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